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II. 검토의견

1. ‘푸드테크’ 용어 사용의 적절성(법 제명 등)

-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한 용어로 “Food Tech”를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제정안 제2조제1호는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최근 기술의 진보·발전 등으로 인하여 새로 등장한 외국어를 법률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나, 법 제명에서

부터 외국어를 사용한 사례는 많지 않은 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푸드테크(food tech)’를 대체하는 말로 ‘첨단 식품 기술’을 선정하여 발표¹⁾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법률안의 용어 사용 형식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외국어인 ‘푸드테크’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푸드테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등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²⁾.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펫코노미’는 ‘반려동물 산업’으로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다듬은 말 마련 -」, 2011. 11. 17.

2) 2024. 11. 21.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임시회의록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필요 (안 제8조제4항)

- 제정안 제8조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안 제8조제2항),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안 제8조제3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8조제4항).

제정안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8조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위임입법이 될 우려가 있는 점,

제정안 제13조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의 경우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전담기관

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8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우에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제정안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정,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제4항에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타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